여시재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

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19. 8. 26.

상속세를 보는 관점

- >> 영미의 보통법과 대륙의 시민법(civil law)이 모두 상속세법은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 (positive law)으로 간주 →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입법되고 언제든 입법자들이 폐지할 수 있는 법의 유형으로 간주 →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외적 재정지출(ex. 전쟁비용 지출 등)이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도입
- ➤ 독일은 가족 원칙(family principle) → 피상속자의 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법적 실체 (legal entity)로서의 가족의 소유라는 관념. 상속세는 가족의 통합성(unity)을 깨는 국가의 파괴적 간섭으로 인식
- ▶ 상속세는 사적 자본투자에 기초한 경제질서에 심각한 비효율성 초래 → 사적 재산 권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검약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인센티브를 박탈 → 소기업 들까지 위험 →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타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

한국의 상속 · 증여세

▶높은 상속세율

- ▶현행 상속세 세율은 10~50%,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
- ▶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
- ▶직계비속 등 피상속인 → 상속인의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
- ▶ 상속세 최고세율 50%는 OECD 평균 최고세율 25.8%*의 2배에 달하고 일본(55%)
 다음으로 높음
 - ▶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19개국의 최고세율
- ▶ 생전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
 은 이중과세 → '사망세'라는 비판
- ▶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간 약 20만 건의 사망사건 중 7,000명 정도에 불과→ 세수 비중이 매우 적음
 - ▶ 나머지는 대부분 한정승인(2018 서울 가정법원 한정승인 건수 8,200여 건, 10년 전에 비해 60% 이상 상승)

상속세 비율

▶ 겨우 1% 정도

자료: 기획재정부 징세과(2019-03-27) / 단위: 억원

	국세 수입(세수) 및 세목별 세수 비율						
순번	구 분	2016년	비율(2016년)	2017년	비율(2017년)	2018년	비율(2018년)
	총 계	2,333,291		2,555,932		2,835,355	
1	소 득 세	701,193	30.05%	768,345	30.06%	862,887	30.43%
2	근로 • 자녀장려금	△16,223	-0.70%	△17,688	-0.69%	△18,271	-0.64%
3	법인세	521,154	22.34%	591,766	23.15%	709,374	25.02%
4	상속세	19,949	0.85%	23,419	0.92%	28,315	1.00%
5	증여세	33,552	1.44%	44,433	1.74%	45,274	1.60%
6	종합부동산세	12,939	0.55%	16,520	0.65%	18,728	0.66%
7	부가가치세	618,282	26.50%	670,870	26.25%	700,091	24.69%
8	개별소비세	88,813	3.81%	98,608	3.86%	104,510	3.69%
9	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	153,030	6.56%	155,526	6.08%	153,348	5.41%
10	주세	32,087	1.38%	30,346	1.19%	32,609	1.15%
11	인지세	9,058	0.39%	8,958	0.35%	8,812	0.31%
12	증권거래세	44,681	1.91%	45,083	1.76%	62,412	2.20%
13	교육세	48,792	2.09%	50,071	1.96%	50,976	1.80%
14	농어촌특별세	24,514	1.05%	25,776	1.01%	31,989	1.13%
15	기 타	41,470	1.78%	43,899	1.72%	44,301	1.56%

현행 상속세 세율

구 분	세 율		
1억 원 이하	과세표준의 10%		
1억 원 ~ 5억 원	1천만 원 + (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)		
5억 원 ~ 10억 원	9천만 원 + (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)		
10억 원 ~ 30억 원	2억 4천만 원 + (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)		
30억 원 초과	10억 4천만 원 + (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%)		

상속세 국제비교

➢ OECD 국가의 상속세 과세 현황 (자료: 전규안, 2018)

구분	국가		
상속세 부과 <22개국>	한국, 독일, 일본, 프랑스, 영국, 미국, 스페인, 아일랜드, 벨기에, 스위스, 칠레, 핀란드, 그리스, 네덜란드, 헝가리, 덴마크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터키, 폴란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		
자본이득세 부과 (상속세 폐지 연도)	호주(1979), 캐나다(1972), 스웨덴(2004)		
상속세 폐지 (상속세 폐지 연도) <10개국>	이스라엘(1981), 뉴질랜드(1992), 포르투칼(2004), 슬로바키아(2004), 멕시코(2005), 오스트리아(2008), 노르웨이(2014), 체코(2014), 에스토니아(미시행), 라트비아(미시행)		

- ➢ OECD 회원국 총 36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(64%),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 개국(36%)
 - ▶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반면, 한국은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,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 가 인하한 국가는 15개국, 이 중 4개국은 상속세 면제
 - *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7개국으로 OECD 절반가량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

- ▶ 한국 산업 고도화가 1970~1980년부터 시작 → 40~50년 후인 현 시점부터 본격적인 가업승계가 대폭 이뤄질 예정
 - ▶ 기업 1세 소유주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시점 → 가업을 승계할 때 과 중한 상속세 문제가 핵심의제로 대두
 - ▶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 평균 연령: 63.3세
- ▶ 기업주가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해도 현행 가업승계제도와 같이 '법인세 납부' 후 '추가 상속세 납부'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한다면, 실질적 이중과 세로 인하여 승계 후 상당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
 - 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가족기업 상속 시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
 - ▶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율이 높음

한국의 가족기업

- ▶ 우리나라는 가족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 → 국가적, 기업별로 볼 때 가업승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
- ▶ 가족기업 비중 44% 이상인 국가: 대륙법계(Ellul et al., 2010)
 - 브라질, 일본, 독일, 스페인, 한국, 스웨덴, 대만
 - 독일: 제조업의 85%가 가족기업(Grossmann and Strulik, 2010)
 - 한국: 제조업의 85%, 상장기업의 70%가 가족기업
- ▶ 가족기업 비중 24% 이하인 국가: 영미법계
 - 호주, 캐나다, 아일랜드, 영국, 미국
- ▶ 상속 증여 세제를 개편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 시급
 - ▶ 기술력 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장기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

- 중견기업연합회가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→ 84.3%의 기업이 "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"고 응답
- 중견・중소기업 M&A는 2016년 275건 → 2018 352건(28% 순증)
- ▶ 2019. 1분기 73개 기업 경영권 매각 등 경영권 승계 포기, 기업 매각 속출
- ▶ 2018년 한국 300~400개 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놨을 것으로 추정
- ▶ 최근 국내 최대 M&A(인수・합병) 플랫폼 운영기관인 한국M&A거래소
 (KMX)에 2018년 한 해 동안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 730곳 분석 결과,
 상속하는 대신 팔아서 현금을 물려주겠다는 기업이 118곳(16.2%)에 달함
- ▶ 사모펀드 + 회계법인 경영권 승계 전문팀으로 구성된 가업승계포기기업 상대 매각 마케팅 시장 활성화의 비정상적 현상

한국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

▶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승계시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

국가명	상속세 명목 최고세율	직계비속 상속 시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	가업상속공제혜택 적용 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 고세율
한국	50%	65%*	65%**
독일	50%	30%	4.5%
프랑스	60%	45%	11.25%
벨기에	80%	30%	3%

^{*}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%이나, 주식으로 가업승계 시 할증(10%~ 30%)이 붙어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5%로, 일본 상속세 최고세율(55%) 보다 높은 OECD 상속세 최고세율

자료: 한국경영자총협회(2018).

^{**}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나, 대상이 한정적이고, 요건이 까다로우며, 공제상한(200~500억원)이 있어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.

한국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

- ▶ 적용요건 : 가업요건 + 피상속인 요건 + 상속인 요건 + 사후관리 요건
- ▶ 1) 가업요건
- ▶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-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- ▶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
- ▶ 2) 피상속인 요건
- ▶ ① 상속 당시 60세 이상인 부모(상속 당시 부모 사망시 조부모)일 것
- ▶ ②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할 것, 기간 중 50%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
- ▶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%(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%)이상 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

한국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

- ▶ 적용요건 : 가업요건 + 피상속인 요건 + 상속인 요건 + 사후관리요건
- ▶ 3) 상속인 요건
- ▶ ① 상속 당시 18세 이상의 자녀일 것
- ▶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
- ▶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
- ▶ 4) 사후관리 요건
- ▶ ① 사후관리기간: 10년간 가업 유지, 휴 폐업 금지, 대표 유지, 업종유지(세분류 내 변경허용)
- ▶ ② 가업자산 20% 이상 처분금지, 지분유지
- ▶ ③ 고용유지: 매년 80% + 10년 평균고용 100%(중견기업은 120%)

가업 상속 공제 요건 (부연설명)

- ➢ 공제대상: 1997년 중소기업(5년 이상 경영)에서 현재 중견기업(10년 이상 경영, 매출액 3천억원 이하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)으로 다소 확대되었으나, 2017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(10년 이상)이 추가
- ➢ 공제요건: 중견기업의 경우 '상속세 납부능력 요건' 추가(2019년 시행). 가 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(부담 하는 상속세액의 1.5배 이상)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
- ➢ 공제상한: 가업영위 10년 이상 200억원, 20년 이상 300억원, 30년 이상 500억원 등 공제상한이 존재
- ▶ 사업영위기간: 사업영위기간이 10년/15년/20년에서 10년/20년/30년으로
 더 길어져 최근 요건이 강화 → 사실상 공제한도의 축소
- ▶ 요건 불준수시 7년 이내 100%, 8년 이내 90%, 9년 이내 80%, 10년 이내 90%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

'증여세 과세특례제도'도 있음

- ▶ 역시 쓸모가 없음
- ▶ 적용대상: 주식만 됨
- ▶ 적용한도: 겨우 100억 원, 가업상속의 경우도 최대 500억 원 감면
- ➤ 증여자의 연령: 60세 이상으로 고정
- ▶ 수증자의 연령: 18세 이상
- ▶ 공동승계 관련 수증자 1인만 승계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(1)

- ▶ 한국은 중소・중견기업에 한해 연 매출액, 대표자 경영기간, 고용유지, 자산유지 등 공제요건도 까다롭고 공제한도도 비교적 소액이라 활용도기 매우 낮음
 - ▶ 가업상속제도 혜택을 신청한 사례는 2011년부터 5년간은 연 평균 고작 62건,2016년에는 76건. 액수도 3,200억 원
 - ► 독일은 가업상속제도 활용이 활발 → 연 평균 1만7천여 건, 액수로도 연간 55조원

높은 상속세율의 정상화

- ▶ 현행 최고 50%인 상속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최고세율 평균 25.8%에 근접시켜야 함
- ▶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가 타당하나,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직계비속상속세율을 따로 인하해야 함
- ▶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18개국은 가족에 대한 상속 시,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함(프랑스, 영국, 독일, 이탈리아 등)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(2)

▶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할증과세 폐지

- ▶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최대 30% 할증을 적용하는 할증과세 폐지
- ▶ OECD 중 한국만 유일하게 일률적으로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 평가
- ▶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, 성장잠재력, 대외 위험도,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할증과세 방식은 과세근거가 취약
- ▶ 최대주주 주식지분 상속 증여시 중소기업은 2020년 말까지 할증 평가 배제 → 영구배제 해야
 - 지분율 50% 이하 증여: 대기업(중견기업포함)은 20%, 중소기업은 10% 할증률 비적용
 - 지분율 50% 초과 증여: 대기업(중견기업포함)은 30%, 중소기업은 15% 할증률 비적용
- 2021년부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% 할증, 중소기업은 할증 배제 입법예고 (2019.7.20)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(3)

- ▶ 가업상속공제제도 전면 개편
 - ▶ 공제상한(500억) 폐지하거나 현행보다 대폭 증액
 - 사전·사후 요건 완화
 - ▶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공제대상 확대 및 사전・사후요건을 완화해야
- ▶ 업종 유지요건 완화: 가업상속 이후 기업이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업종변경 요건 완화
 - * 현행 한국 표준산업분류(대분류-중분류-소분류-<mark>세분류</mark>-세세분류)상 세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 가능
 - *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인정 등 주된 업종 제한 폐지하고 업종변경 자율화 허용 필요
- ▶ 지분율 유지 기간, 사업영위 기간, 대표직 유지기간 등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
 - * 한국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(10년)은 프랑스(3년), 일본(5년), 독일(5년)에 비해 2배 이상임
- 가업용 자산유지 의무 완화
 - ▶ 5년간 90%, 10년간 80% 유지 → 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시 면제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(4)

- ▶ 대표이사 재직 요건 :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표이사 재직 요건 삭제, 가업안정성을 담보한 가업승계 전 • 후 경영 기간 요건 축소
 - ▶ 상속 후 대표직 유지 기간은 일본은 5년, 독일 · 프랑스 등은 없음
- ▶ 고용 유지요건 완화: 10년간 상속 직전 사업연도 대비 정규직 근로자수 100%, 중 견기업은 120% 유지는 과도한 조건
- ▶ 의무 이행연도(10년)를 단축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자 급여총액 유지요건으로 전환 또는 병행할 수 있도록 함
 - ▶ 4차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, 일자리 수의 보존보다는 질적 실현에 중점을 둘 필요
 - ▶ 프랑스, 영국은 고용유지 요건이 없으며, 독일의 고용유지 요건은 근로자 급여 총액을 기준함
- ▶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번환해야 함

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(5)

- ▶ 공제대상 확대: 단기적으로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대상 요건을 매출 1조원까지 완화하여 공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▶ * 매출 3천억~1조원 사이의 상장 중견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고 가정 시, 다음 후계자가 상속받아 경영할 동안(20년 가정) 매출 6.8%(+52조원), 고용은 3.0%(+1,770명)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

<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후대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>

	(변경전) 공제대상 현수준 유지 (3천억 미만)	(변경후) 공제대상 확대 시 (1조원 이하)	증가 효과	증가율
매출액	775조	828조	53조	6.8%
법인세	17.9조	18.6조	6,816억	3.8%
고용량	58,681명	60,451명	1,770명	3.0%

* 자료 : 한국경제연구원(2019.2.)

외국의 가업승계 제도 (일본)

- ▶ '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' 및 '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'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
- ▶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 →
 2018. 4.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 →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
 대폭 완화
 - ▶ 감세대상 확대: 가업승계시 증여・상속 세금 유예 감면 대상 주식을 종전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에서 전체로 확대(비상장 중소기업 대상)
 - ▶ 면세 규정 확대: 손자까지 상속하거나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 상속・증여세 면제
 - ▶ 사후 조건 완화: 상속 증여 후 5년간 80% 고용 유지 조항 탄력 적용
 - ▶ 기타: 1명만 허용하던 상속인을 3명까지 인정
 - ▶ 상속개시 직전 임원이어야 하고,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 대표 취임해야 함
- ▶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50% 초과 보유

외국의 가업승계 제도 (독일)

- ▶ 한국은 공제 대상기업을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하지만, 독일의 경우 일차 적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에 포함
- ▶ 한국은 경영요건인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
 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, 피상속인의 지분율도
 우리나라의 50%(상장기업은 30%)에 비해 독일은 25%로 엄격하지 않음
- ▶ 사후관리기간도 독일은 5년 또는 7년으로 우리나라의 10년에 비해 짧음
 - ➤ 독일의 고용유지 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하며 5년간 상속연도 급여합계400% 이상을 유지 또는 7년간 상속연도 급여합계 700% 이상 유지하는 요건
 - ▶ 한국 고용유지 요건은 종업원 수로 하고 있으며 10년간 100% 유지(중견기업 120%)할 것으로 하고 있어 독일보다 까다로움

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비교

구분		한 국	독 일
	적 용 대상	▶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▶ 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	➤ 모든 기업 (제외)비사업용자산 10%이상 기업 (예외) 2,600만 유로 초과 자산을 가진 기업 은 필요성 심사 및 공제율 축소
요 건	가업 및 피상속인	<가업영위기간> ➤ 10년 이상 경영 ➤ 기간 중 50% 이상 대표자 종사 <지분율> ➤ 특수관계인 포함 50% (상장기업 30%) 이상	<가업영위기간> 제한없음 <지분율> ■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% 이상
상속인		2년 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	제한없음
사후 관리		<사후관리기간> 10년 ▶ 가업유지 ▶ 휴・폐업 금지,대표 유지, 업종유지(세분류 내 변경허용) ▶ 가업자산 20% 이상 처분금지 ▶ 지분유지 ▶ 고용유지: 매년 80% + 10년 평균고용 100%(중견 120%)	▶ 휴・폐업 금지▶ 가업재산 유지(처분비율 추정)▶ 지분 및 자본유지

결어 (상속세제와 가업상속제도 개혁)

- ▶ 한국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불가능. 국가는 점점 더 부자가되고 개인과 기업은 점점 더 가난해 짐
- 상속인의 상속을 불로소득, 부의 대물림, 부의 양극화,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이해하여여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약탈
- ▶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속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
-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을 붕괴시키고 결국은 한국을 붕괴시켜 기업의 미래와 후손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
- ▶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는 가족의 identity 보호를 위해 폐지해야 함
- ▶ 피상속자(亡者)의 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법적 실체(legal entity)로서의 가족의 소유
 → 가족 내부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은 가족 간 연대(solidarity)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
 인 → 상속권자의 사후 정체성(identity)을 전달하고 지속시키는 상징
- ▶ 93억 5000만 파운드(약 13조 4천억 원)상속받은 영국 제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은
 약 2억 파운드(약 2,853억 원)의 상속세만 내면 되었음(고성을 지키는 귀족들 대부분의 재산은 재단의 재산임)